

수강신청 부정행위 관련 알림

□ 관련 학칙 및 규정

○ 「서울대학교 학칙」 제107조(징계)

① 총장은 학생이 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규정」 제3조(징계사유)

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징계 심의·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한다.

1. 학업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
2. 수업이나 학사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
3. 학교 건물에 무단 침입하거나 이를 점거한 사람
4. 학교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, 손괴하거나 외부에 무단 반출한 사람
5. 학교의 컴퓨터·통신망·데이터·소프트웨어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한 사람
6. 학교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·변조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
7. 언어적·신체적 폭력과 괴롭힘,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발언 등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람
8. 「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」 제2조가 정하는 성희롱·성폭력, 인권침해 등 행위를 범한 사람
9. 「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」 제33조에 따른 징계 요청이 있는 사람
10. 학칙 등 본교에서 시행되는 제 규정을 위반한 사람
11. 형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
12. 그 밖에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사람

□ 수강신청 관련 부정행위 유형 및 사례

- 동일 학생 계정에 여러 접속환경(PC와 모바일 등) 또는 종류가 다른 웹 브라우저에서 수강신청 사이트에 동시 접속하여 서버 부하 유발 및 수강신청 교과목 선점
→ 2016학년도 1학기, ○○대학 소속 학생 적발 및 엄중 경고(차회 적발시 징계)

- 동일 행동 반복 수행 프로그램(통칭 “매크로”)을 사용하여 동일 시간 내에 일반적 신청 횟수보다 많은 신청 시도를 함으로써 정상 이용자의 기회 박탈
→ 2017학년도 1학기, ○○대학 소속 학생 적발 및 수강신청 내역 취소 처리
→ 2018학년도 1학기, 30여명 학생 적발 및 수강신청 내역 취소 등 조치 처리

- 다른 학생의 신청내역을 열람하거나 신청 교과목을 탈취할 수 있는 부적정 프로그램의 사용으로 공정성 침해
→ 2016학년도 1학기, ○○대학 소속 학생 적발 및 유기정학 처리